기전여고 기숙사 학생 자치위원회 구성 규정

【제 1 장 총 칙】

제1조(명칭) 본회는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기숙사 학생자치회(이하 "자치회"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【제 2 장 자치회 조직 및 활동】

제3조(회원의 자격) 자치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.

제4조(구성 및 임무) 자치회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자치회 임원: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구성
- 2. 임원의 대표적 임무
 - 가. 회장: 자치회 총괄,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와 3학년 대표를 겸한다.
 - 나. 부회장: 자치회장 보좌,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의 임무 대행하며 2학년 대표를 겸한다.
 - 다. 총무: 회장 부회장을 도우며 1학년 대표를 겸한다.
- 제5조(임원 선출 및 임기)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 - 1. 임원: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
 - 2. 임기: 1년
 - 3.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,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함
- **제6조(심의 사항)** 자치회는 학생들의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. 단,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 논의한다.

- 1. 자치회 회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
- 3.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7조(회의와 의결)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.
 -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)에 보고한다.
 - ④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봉사활동 시간 부여) 자치회 학생들에게 자치활동 시간만큼 학기별로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.
- 제9조(자치회 임원 주요활동) 자치회 임원이 다음과 같은 기숙사 환경 및 생활 수칙 준수를 확인한다.
 - 1. 주요활동: 학우들의 바른 생활 습관 유도, 선후배 간 예절과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, 민주적인 참여 의식 향상 고취
 - 2. 환경미화 활동: 기숙사 내외 환경 꾸미기, 필요 물품 또는 손상된 시설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사감 부장 교사에게 건의(각 방과 자습실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)
 - 3. 봉사활동: 기숙사 내 봉사활동 적극 참여
 - 4. 쾌적한 자습실 조성 관리

【제 3 장 기숙사 생활 수칙】

- 제10조(생활 수칙 제정) ① 기숙사 생활 수칙은 입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(입사 학생, 사감)과 이해관계자(학부모, 교원 등)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.
- ② 생활 수칙 제정 시 반영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범절(존중과 배려 등) 반영
 - 2.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
 - 3. 학생 간, 학생과 사감 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 규정
 - 4. 보건, 안전, 교우 관계 및 올바른 생활 습관, 학습능률 향상, 자신의 문제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, 기타 생활교육에 관련된 내용 등

③ 세부적인 기숙사 생활 수칙은 별지로 작성하고, 기숙사 입사 학생 모두가 자치회에서 정한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2022.03.02.

학사장	교감	교장

기숙사 학생 자치위원회 규정

(2022.04.26.)

전 주 기 전 여 자 고 등 학 교